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이영재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 도 자 료

2020. 6. 25.

제 목	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'휴대폰깡' 및 대포폰 유통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(부장검사 김정헌)는 지역사회 내 '대포폰' 유통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**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수사단서**를 확보한 후 '20. 2.~6. 약 5개월간 **휴대폰의 불법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수사**한 결과,

① 지역 생활정보지에 속칭 '휴대폰 깡'(휴대폰 구입을 통한 대출) 광고를 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**'휴대폰 깡' 브로커** 및 그 공범자인 **대리점업주**, '휴대폰 깡' 광고를 게시하여 영업이득을 취한 **광고업자**, 휴대폰 공기계와 유심(USIM)을 불법 거래한 **대포폰 매매 알선업자** 및 **매수인**, 휴대폰 구매 방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**명의대여자** 등 **총 13명을 입건**하여 그 중 **3명은 구속 기소**하고 **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**하였음

② 아울러 피고인들이 '휴대폰 깡' 및 대포폰 유통으로 취득한 **범죄수익 총 1억 5,8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환수 조치**하였음

Ⅰ 피고인 및 주요 범죄사실 요지
- 총 13명, 구속 기소 3명, 불구속 기소 1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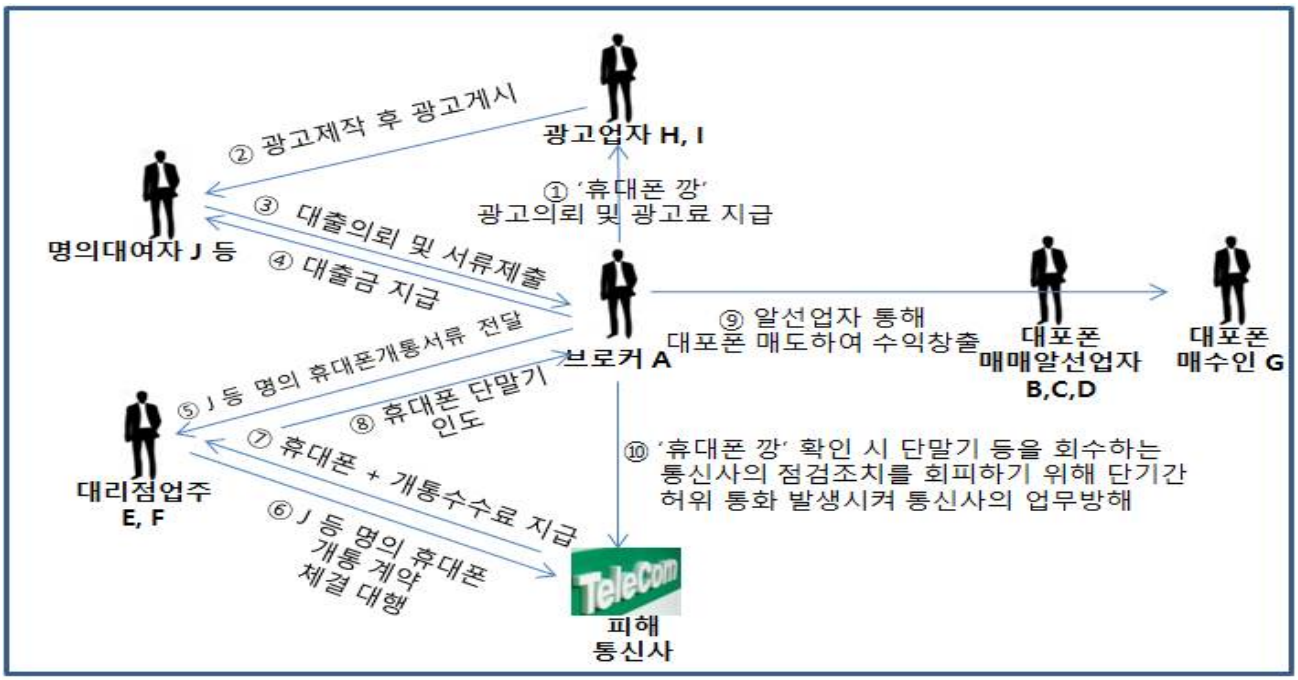

- **'휴대폰 깡' 브로커 A(47세, 구속)**
  - 2016. 10.~2019. 10. 지역 생활정보지에 '휴대폰 깡 '광고를 하고,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, **단말기 및 유심 465개, 합계 4억 4천만 원 상당을 피해 통신사로부터 편취**하여 **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**
  - '휴대폰 깡'으로 확인되면 단말기 등을 회수하는 통신사의 점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등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**(위계)업무방해**
- **대포폰 매매알선업자 B(42세, 구속), C(42세, 구속), D(51세, 불구속)**
  - 2016. 10.~2020. 2. 휴대폰 유심 110개, 50개, 13개를 대포폰으로 매도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**
- **휴대폰 대리점주 E(43세, 불구속), F(41세, 불구속)**
  - 2016. 10.~2020. 2. '휴대폰 깡' 브로커와 공모, **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 465개 등 합계 4억 4천만 원 상당**을 편취하여 **사기**
  - '휴대폰 깡' 확인시 단말기 등을 회수하는 통신사의 점검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등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**(위계)업무방해**

- **광고업자 H(54세, 불구속), 광고법인(I, 불구속)**

  - 2017. 5.~2019. 11. '휴대폰 깡' 광고를 게시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**

- **명의대여자 J(58세, 불구속) 등 4명**

  - 2019. 5.~11. '휴대폰 깡'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**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**

Ⅱ 수사 경과

- 2020. 2. 지역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불법 '휴대폰 깡' 광고 확인, 수사착수
- 2020. 3. 5. **피의자 A 구속 기소**
- 2020. 5. 14. **피의자 B, C 각 구속 기소**, 피의자 D, E, F 각 불구속 기소
- 2020. 5. 18. 법원, 피의자 A, B, C, D, E, F 등에 대하여 각 **범죄수익환수결정(총 1억 5,800만원)**
- 2020. 5. 26. **광고업자인 피의자 H, I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불구속 기소**

  ※ 기소 여부를 **검찰시민위원회**에 회부하여 **만장일치 기소의견**으로 의결

- 2020. 6. 24 대포폰 매수인 G, 명의대여자 J, K, L, M 각 약식명령 청구

Ⅲ 참고사항

- '휴대폰 깡' 관련 휴대폰 유통구조의 전모를 밝혀 그 범행 수법과 특성을 유형화하고, 이를 통해 통신사에서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
-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불법 '휴대폰 깡' 광고를 통해 범행을 매개하고 방조해온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함으로써 지역 내 '휴대폰 깡' 광고가 대거 사라지게 되었고,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이 선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음 ▨

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	피고인	성별, 연령	직업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	47세	**브로커**	2016. 10.~2019. 10. 지역 생활정보지에 '휴대폰 깡' 광고를 하고, '휴대폰 깡' 목적으로 통신사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 465개 등 합계 4억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심을 대포폰으로 유통하고, '휴대폰 깡' 확인시 단말기 등을 회수하는 통신사의 점검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통화를 발생하는 등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방해하여 **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, (위계)업무방해 등**	**구속 기소**
2	B	42세	**중고폰 매매 알선업자**	2016. 10.~2020. 2. 휴대폰 USIM 칩 110개를 양도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**	**구속 기소**
3	C	42세	**중고폰 매매 알선업자**	2016. 10.~2020. 2. 휴대폰 USIM 칩 50개를 양도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**	**구속 기소**
4	D	49세	**중고폰 매매 알선업자**	2016. 10.~2020. 2. 휴대폰 USIM 칩 13개를 양도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**	불구속 기소
5	E	43세	**휴대폰 대리점주**	2016. 10.~2020. 2. 합계 4억 1천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 410개 편취 및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방해하여 **사기 및 (위계)업무방해**	불구속 기소
6	F	41세	**휴대폰 대리점주**	2016. 10.~2020. 2. 합계 3천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 20개 편취 및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방해하여 **사기 및 (위계)업무방해**	불구속 기소
7	G	39세	**대포폰 매수인**	2019. 5.~2019. 6. 유심 12개를 매수하여 무등록대부업에 사용함으로써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**	약식명령 청구
8	H	54세	**광고업자**	2017. 5.~2019. 11. A의 의뢰로 '휴대폰 깡' 광고를 게시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**	불구속 기소
9	I	법인	**광고업자**	2017. 5.~2019. 11. A의 의뢰로 '휴대폰 깡' 광고를 게시하여 **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**	불구속 기소
10	J	58세	**명의대여자**	2019. 9.경 본인 명의로 휴대폰 7대를 편취하고 양도하여 **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**	약식명령 청구
11	K	63세	**명의대여자**	2019. 3.경 본인 명의로 휴대폰 4대를 편취하고 양도하여 **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**	약식명령 청구
12	L	62세	**명의대여자**	2019. 11.경 본인 명의로 휴대폰 4대를 편취하고 양도하여 **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**	약식명령 청구
13	M	43세	**명의대여자**	2019. 5.경 본인 명의로 휴대폰 5대를 편취하고 양도하여 **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**	약식명령 청구